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김 주 흥\*

## I. 개성공단의 의의

우리기업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시범단지 입주기업 선정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외국기업들도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남북한 최초의 공단개발사업이라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저렴한 토지이용료와 노무비 및 물류비 절감, 생산인력 확보 등 개성공단의 이점은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II.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 1. 적격 지원상품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품은 거래형태별로 반출자금 대출, 반입자금 대출, 경제협력사

업자금 대출로 분류된다. 반출자금 대출은 국내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반입자금 대출은 북한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은 국내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중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는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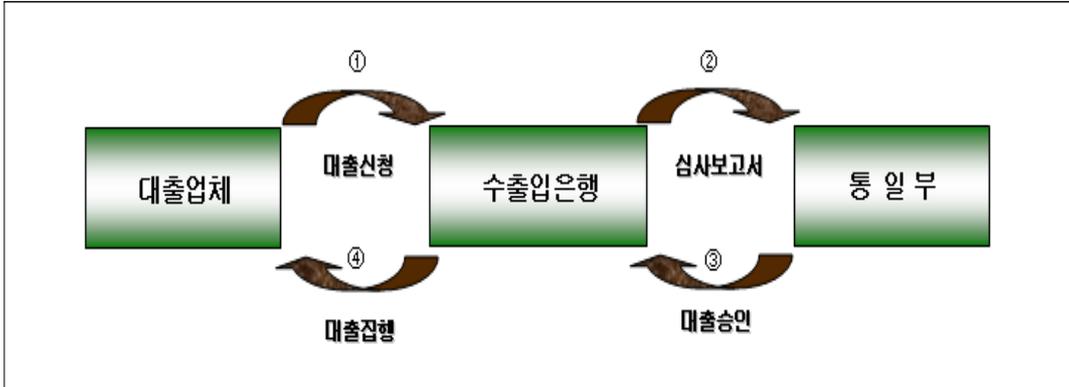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로 현지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요자금은 토지이용권, 건물공사비, 기계설비 구입비, 초기 운전자금 등을 포함한다. 대출을 받는 주체는 국내 모기업이다.

### 2. 대출절차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

\*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심사역

### 대출 절차



일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제협력사업승인을 취득한 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은 법규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규와 개성공업지구법 및 기타 하위 규정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선 대출상담을 하고, 금융지원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상담 후 대출희망 기업은 대출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접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통일부에 보고한다. 대출승인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업체방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로 제출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통일부는 대출

을 승인한다. 통일부의 대출승인 후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3. 대출조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대기업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8년이며 사업에 따라 3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원금상환은 연 2회 정기균등분 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신용위험 가산율이 가감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0.5%를 할인해 준다. 2004년 9월 기준으로 대출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중소기업의 최고 대출금리는 3.8%이다.

**주요 대출조건**

대출금액	소요자금의 최대 90%
대출기간	최장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금리	국고채 유통수익률+신용위험가산율(△1%~0.5%) - 중소기업할인율(0.5%)
상환방법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는 통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체 신용도에 대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리 결정 체계는 지표금리인 국고채를 기준으로 금융채, 회사채 순으로 스프레드가 가산되는데, 회사채는 신용도에 따라 스프레드 차이가 매우 심하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한다는 것은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채권보전이다.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대체로 자산규모 및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하여 신용한도가 매우 작고,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중 자체자금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신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고 담보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북한소재 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특례'이다.

**4.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특례**

신용한도가 부족하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북한소재자산을 '첨담보'<sup>1)</sup>로 인정하여 추가 신용대출을 해주는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특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북한소재자산을 '첨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sup>2)</sup> 이상일 것
-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3배 범 위내일 것
- 자기자본회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1/2 이상일 것
- 사업성이 양호할 것
- 북한 당국에 저당권을 등록할 것

1)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담보가 아닌 보완 담보이다.  
 2) 한국수출입은행의 10개 신용등급 중 7등급에 해당된다.

합작이나 합영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경우는 담보권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 북한소재자산 신용대출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북한소재자산, 즉 개성공단에 소재한 자산은 토지·건물의 경우 투자금액의 40%까지, 기계설비는 30%까지 인정하며, 남북협력기금 대출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 10%까지(합계 50%)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구비요건을 살펴보면, 저당권 등록을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금소요는 설립 전 발생하고 저당권 등록은 공사완공 후에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기업은 북한소재자산을 대출 후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북한소재자산 첨단보는 후취득할 수밖에 없으며 대출취급시 담보취득 요건의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개성공단내 현지법인의 자산을 개성공단 관리기관에 등록한 후, 채권자는 개성공단 관리기관에 저당권 등록을 한다.

## 5. 경제성 분석

북한소재자산 신용대출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양호해야 한다’는 선행요건이 있다. 기금대출신청서에도 사업계획서가 첨부된다. 그러나 기금대출 목적보다는 기업 자체적으로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투자의사결정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밀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경영자의 감각에 의존하여 투자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투자는 시장수요와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경제성을 분석하고 투자입지, 법률여건, 노무여건 등의 다양한 투자환경 분석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류가 사업계획서이므로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성 분석은 투자의사결정안, 즉 투자안 자체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차입자인 모기업과 개성현지법인의 미래 재무추정이 포함된다. 경제성 분석시 투자안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경험사업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의 신용평가는 다음으로 중요한 몫이다.

통상 국내기업들은 개성에서 저임의 노무비를 활용한 저가 생산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내수판매하거나 수출을 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투자안은 다소 추상적인 실체이나 모기업의 판매가와 개성현지법인의 원가를 혼합한 것이다. 제조는 개성에서 이루어지나 판매는 내수 또는 수출이므로

개성현지법인의 제조원가와 모기업의 판매가를 각각 반영하여 경제성을 분석한다.

경제성 지표로는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을 주로 활용한다. 순현재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에서 투자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현재가치와 투자금액을 일치시키는 수익률로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Ⅲ.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례

#### 1. 개성공단 진출시 고려요소

우리기업들이 개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부분 생산기지 건설에 있다. 기업들이 개성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협력사업승인 등의 내부절차를 마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기업 창설을 한다.

영업소나 대리점을 원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사무소나 영업점은 국내법 규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현지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다음으로 투자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즉 단독투자, 국내 기업과의 공동투자, 북한측 사업자와 합작투자 또는 합영투자 등의 투자방식을 결정한다. 이같은 투자형태는 기업의 경영전략 외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시에도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합영이나 합작의 경우 북한소재자산 신용대출특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국내 모기업이 개성현지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국내 생산공장의 일부를 이전할 것인지, 제2공장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시설을 모두 이전하고 국내 모기업은 판매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모기업의 성격과 수익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개성현지법인 운영전략과 사업방향은 향후 차주의 상환능력과 자산가치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심사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추가로 현지법인의 자본구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투자는 자본출자 또는 대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현지법인의 자본 및 부채구조가 달라진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의 10%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토록 하고 있다. 모기업이 개성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대부하여야 한다. 개성공단과 국내의 세율이 다

르므로 기업은 조세전략 등을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성현지법인 설립은 궁극적으로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극대화가 목적인 것이다. 수익은 이자수익, 배당수익, 생산원가 절감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제고 등이다. 개성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개성현지법인은 국내 모기업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모기업은 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개성현지법인 결산결과에 따라 지분법 손익과 배당수익도 반영해야 한다.

## 2. 시범단지 지원사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았으며, 3개 업체는 상담중에 있다. 시범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의 미비, 초기 진출의 불확실성 등 기업경영 전반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은 저임의 노무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개성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주업체들과의 대출상담시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제한된 기금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로 어느 정도의 대출한도를 정하였고 자기자금 확보와 위험분산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채권보전은 기업들의 담보제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소재자산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신용한도가 부족한 경우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의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북한소재자산은 기업을 창설하고 건물을 완공한 후 담보취득이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후취담보를 인정하였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경우 개성공업지구법과 부동산규정 등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토지·건물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개성공단소재 자산을 첨담보가 아닌 정규담보로 자산가치의 최대 50%까지 인정하였다.

대출신청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1개 업체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개성공단의 투자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선정 후 부천공업(주) 등 11개 업체와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과 관련한 융자상담,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비상위험일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조해 주는 손실보조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제도는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인 활용을 기대한다. 